

복지서비스는
365일 24시간
활짝 열려있습니다.

bokjiro.go.kr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대한민국 대표 복지서비스 50



이 책은 사회보장위원회(www.ssc.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책에 사용된 이미지는 공공의 목적 이외(상업용·판매용)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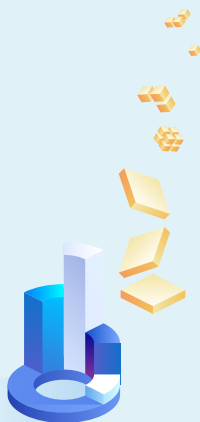


차례

- 01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04p
- 02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 06p
- 03 긴급복지 지원제도 ◆ 08p
- 04 행복주택 공급 ◆ 10p
- 05 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 13p
- 06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14p
- 07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 15p
- 08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 16p
- 09 통합문화이용권 ◆ 17p
- 10 평생교육 바우처 ◆ 19p
- 11 실업급여 ◆ 20p
- 12 취업성공패키지 ◆ 22p
- 13 내일배움카드제 ◆ 23p
- 14 청년내일채움공제 ◆ 24p
- 15 청년취업아카데미 ◆ 25p
- 16 일학습병행 ◆ 26p
- 17 희망키움통장(I, II) ◆ 27p
- 18 근로장려금 ◆ 28p
- 19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 29p
- 20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 30p
- 21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 32p
- 22 만 0~2세 보육료 지원 ◆ 33p
- 23 만 3~5세 누리과정 ◆ 34p
- 24 가정양육수당 지원 ◆ 36p
- 25 아동수당 ◆ 37p



- 26 아이돌봄서비스 ◆ 38p
- 27 초등돌봄교실 ◆ 40p
- 28 국가장학금[I, II유형, 다자녀] ◆ 41p
- 29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42p
- 30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 43p
- 31 의료급여 제도 ◆ 44p
- 32 건강보험 차상위 ◆ 46p
- 33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 47p
- 3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48p
- 35 기초연금제도 ◆ 49p
- 36 주택연금제도 ◆ 50p
- 37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51p
- 38 치매검진 지원 ◆ 53p
- 39 노인 틀니 지원 ◆ 54p
- 40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 55p
- 41 장애인연금 ◆ 57p
- 42 장애인 일자리 지원 ◆ 59p
- 43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 60p
- 44 장애인 활동지원 ◆ 62p
- 45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 63p
- 46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65p
- 47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 66p
- 48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 67p
- 4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 68p
- 50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 69p



01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8만 4,061원에서 60만 원을
뺀 78만 4,070원 지급(원 단위 올림)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
(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378만 원(3년)	702만 원(5년)	1,026만 원(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금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65세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교육급여 지원내용>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13만 2,000원	7만 1,000원	-	-
중학생	20만 9,000원	8만 1,000원	-	-
고등학생	20만 9,000원	8만 1,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 횟수	연 1회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그 밖의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해산 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60만 원(쌍둥이는 12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 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 원 지급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02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통신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 통화 150도수(450분)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2만 6,0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월 최대 3만 3,000원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 안내 면제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로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35)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1만 1,0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감면(각각 35%) ※ 월 최대 2만 1,000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 교육수급자는 가구원 포함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각종 공공요금	■ 상·하수도요금 감면		읍면동 주민센터 (환경부 ☎1577-8866)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한국전력(☎123)
	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	월 최대 1만 6,000원 (하절기 2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월 최대 1만 원 (하절기 1만 2,000원)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감면내역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방송요금	■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교통비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제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문화활동비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과태료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기타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 주민센터

MEMO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감면내역	지원내용
위기 사유	①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이유)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휴·폐업, 사업장의 화재, 실직, 노숙,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28만 256원, 4인 기준 346만 152원) 이하
재산	■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자원은 700만 원 이하)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주 급 여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료비 등)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19만 4,900원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주 급 여	주거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최대 12회
	사회 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5만 500원 이내	최대 6회
부 가 급 여	교육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초등학생 22만 1,600원 중학생 35만 2,700원 고등학생 43만 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4회*)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9만 8,000원	최대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6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20만 원)	1회
	장제비	장례비 지원	75만 원	1회
	전기 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민간 기관· 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3.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04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행복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계층	입주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종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7,500만 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소득)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 이하 (세대 100% 이하) (자산) 본인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 내) 총 자산 2억 3,2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세대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계층	입주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고령자	■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2억 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	(소득) 세대 소득이 중위소득의 44%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단 근로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2억 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 2019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3인 이하) :

80% 432만 원, 100% 540만 원

※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산단근로자(부부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공급비율 : 젊은층 80%, 취약·노인계층 20%

- 산업단지형은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2. 내용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3.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에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청약하기

4. 문의

- 자격진단, 모집지구 안내(www.happyhousing.c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자주 하는 질문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행복주택 누리집(www.happyhousing.co.kr) 또는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blog.naver.com/happyhouse2u)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 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MEMO

05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기존주택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도시근로자 가구월평균소득 50% (3인 기준 270만 907원) 이하 총자산 1억 9,6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 I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비부부 및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3인 기준 378만 1,270원) 이하 총자산 2억 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 II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3인 기준 540만 1,814원) 이하 총자산 2억 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준생, 만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LH 및 지방공사 공고문 참조)

2. 내용 매입임대사업주택 :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 기존주택 매입임대 : 시세 3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신혼부부 매입임대 : 시세 3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단, 신혼부부II의 경우 시세 80% 이하
- 청년매입임대 : 1, 2순위 시세 30%, 3순위 시세 50%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

3.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 LH를 통해 신청

■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1. 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 등
- 2. 내용** 매입 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간 거주가능)
- 3.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MEMO

.....

.....

.....

.....

.....

.....

.....

.....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1. 대상 소득이 있고 연체가 없는 직장인 및 자영업자
2. 내용
 - 정책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뀔드림론, 사잇돌) 및 민간 금융회사의 일반 대출상품(중금리, 대한상품)의 한도와 금리를 비교해 가장 적합한 대출상품 중개
 -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맺은 56개 금융회사의 160여 개 대출상품의 한도 및 금리 비교 후 가장 적합한 대출 선택
3. 방법 서민금융콜센터 및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누리집(loan.kinfra.or.kr)에서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누리집(loan.kinfra.or.kr)

알려드립니다

맞춤대출서비스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①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편리하게 대출 상담이 가능합니다.
- ② 본인의 소득과 신용에 알맞은 최적의 대출상품을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맞춤대출서비스 이용 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 금융회사별 0.5~3.0%p 우대금리 적용(상품별 상이)
- ④ 대출상품의 단순 안내가 아닌 금융회사의 실제 대출 심사시스템을 통해 대출 가능여부·한도·금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⑤ 가장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선택하여 이자 부담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
- 2. 내용** ■ 전용면적 85m²(읍·면지역 100m², 단독세대주 60m²) 이하로 5억 이하 주택
 (단독세대주 3억)의 구입자금을 최대 2억 원(신혼부부 2억 2,000만 원, 2자녀 가구 2억 4,000만 원, 단독세대주 1억 5,000만 원) 까지 소득별로 연 2.0~3.15%
 (주택 최초 구입 신혼부부 1.7%~2.75%) 저금리로 대출
 ■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3. 방법** 주택도시금융 수탁은행(우리·신한·NH농협·IBK기업은행 등)에 방문 신청
-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MEMO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통합문화이용권

1. 대상 6세 이상(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내용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1인 1매, 연간 8만 원) 발급
 - 문화예술 : 영화, 도서, 음반, 공연, 전시, 사진관, 화방 등
 - 국내여행 : 숙박업소, 철도, 고속버스, 여행사, 놀이공원, 스키장, 온천 등
 - 체육분야 :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관람권, 운동용품, 체육시설 등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현장 결제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온라인 가맹점 목록 확인 후 이용
3. 방법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신분증 지참) → 7일 이내 수령
 - 온라인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발급 신청(본인 인증 필요) → 15일 이내 NH농협은행 영업점 방문 수령 또는 자택 우편 수령 → 수령 등록 후 사용
4. 문의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1544-3412, 카드 사용 관련 일반 문의)
 - NH농협카드 고객센터 (☎1644-4000, 수령 등록 및 분실신고 등)

자주 하는 질문

문화누리카드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 2019년 기준 문화누리카드 신규발급 및 재충전(재발급)은 주민 센터 또는 온라인(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2019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다만, 발급기간(19년 기준 11월 30일) 이내인 경우라도 각 지자체 별 예산이 소진된 경우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이월 및 현금인출 불가)반드시 12월 31일 이전에 사용해 주세요.

올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중간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카드이용을 못하나요?

- 지원금을 받은 후 중간에 자격이 상실되어도 당해 연도 이용기간 종료 시까지는 지원금으로 카드 이용이 가능합니다.(다만 명의자 사망 시 카드이용 불가).

어디에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온·오프라인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사용하기'에서 오프라인가맹점 및 온라인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이외에 본인충전금을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 문화누리카드 앞면의 가상계좌번호에 본인충전금을 입금하여 충전 가능합니다. (최대보유금액 10만 원, 연간 누적 200만 원까지 충전 가능) 개인비용 충전 후 남은 잔액은 전국 농협 영업점을 통하여 인출 가능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용하고 있는데 문화누리카드도 같이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만5~18세) 이용자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로 문화상품권 구매가 가능한가요?

- 문화상품권은 문화누리카드로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10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평생교육 바우처

- 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4인 기준 295만 2,663원)인 가구의 구성원
- 내용** 자원인원 5,000명 내외, 1인당 연간 35만 원 사용한 바우처 지원
※ 단, 대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사용가능 교육	■ 학력취득교육(학점은행제 과정, 초·중등 학력인정 교육과정 등) ■ 학력취득 목적 외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매치업, 지자체 평생학습관 및 대학평생교육원 교육 등)
사용가능 기관	■ 평생교육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평생교육기관 ■ 학점은행 평가인정과정 운영 기관 ■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과정 운영기관

- 방법** 평생교육 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 신청·접수 → 바우처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수령 → 교육기관 수강 신청 및 과정 수강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평생교육기관에서 신청관련 절차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문의**
 - 평생교육 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600-3005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이란?

- 평생교육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에게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평생교육강좌 수강이 가능한 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바우처 카드를 활용하여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도서구입, 재료비를 포함한 그 외의 금액은 지원하지 않으며 정부 지원금 (35만 원)을 초과하는 수강료 금액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실업급여

- 1. 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2. 내용** 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지급
※ 2019년 1월 이후 이직자의 경우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을 6만 6,000원으로 인상
- 3. 방법**
 -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 (고용센터) → 재취업활동(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MEMO

.....

.....

.....

.....

.....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부정한 실업급여 수급은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 되는데 하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이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 (부정수급액의 20%)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3,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MEMO

[illegible]

12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취업성공패키지

1. 대상 I 유형(중위소득층/취약계층)과 II 유형(청년층/중·장년층)으로 구분

I 유형	II 유형
- 만 18~69세 대상(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 15~24세 대상) - 중위소득층 : 중위소득 60%(4인 기준 276만 8,122원) 이하 가구 구성원 - 취업취약층 :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노숙인, 산용회복 지원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비주택거주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 청년층 : 만 18~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대학교 마지막 학기 재학생,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비진학 학생 참여 가능 - 중·장년층 : 만 35~69세 이하로 중위소득 100%(4인 기준 461만 3,536원) 이하 가구구성원

2. 내용 참여자의 특성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 동안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1단계) 진단, 의욕제고 및 취업활동 계획 수립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에게 최대 25만 원의 참여수당 지급 - I유형 : 15~25만 원 지급 - II유형 : 15~20만 원 지급
(2단계) 취업능력과 직장적응력 증진 프로그램 참여	■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200만~300만 원의 훈련비 지원 (I유형 : 최대 10% 자부담, II유형 : 5~50% 자부담) ■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출석일수의 80%를 수강한 사람에 대해 1개월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만 8,000원(월 최대 28만 4,000원)의 훈련참여 지원수당 지급
(3단계)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 만 35~64세 이하의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0만 6,768원) 이하의 저소득층 대상 매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 지급 ※ 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외 ■ 유형 참여자가 취업 시 최대 150만 원(취업 후 3개월 연속 시 30만 원, 6개월 연속 시 40만 원, 12개월 연속 시 8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3.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 → 선정결과 통지 → 프로그램 참여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내일배움카드제

1. 대상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초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 피보험자격 미취득자)
- 영세자영업자(사업기간 1년 이상, 연매출액 1억 5,000만 원 미만)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비진학 예정자
- 대학졸업예정자,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 난민신청자, 농·어업인으로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 등
-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지원 가능

2. 내용

실업자(자영업자)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직업능력훈련비 지원

구분		훈련비 지원율
일반실업자 등	II유형	■ 최대 200만 원까지 훈련비의 20~95% 지원 ■ 월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월 최대 11만 6,000원의 훈련 장려금 지급
	I유형	■ 최대 200만 원까지 훈련비의 30~95%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I유형	■ 최대 300만 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 지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 계좌잔액이 있는 경우 한도를 초과해 훈련비 전액 지원 ■ 월 최대 11만 6,000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3.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계좌발급 신청 → 구직등록 및 교육동영상 시청, 훈련상담 → 자기탐색활동 및 직업훈련정보 수집 → 계좌발급 결정 및 개인훈련계획 수립 →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수강신청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알려드립니다

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훈련 적합성 및 지원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직업능력개발 계좌(내일배움카드)를 발급, 지원합니다.
아래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 단위기간(1개월)의 출석률이 80% 미만인 사람
- 훈련수강 중 취·창업을 한 후에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사람
-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 수강평 입력기간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등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 청년내일채움공제

- 1. 대상**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만 15~34세의 청년
- 2. 내용**
- 2년형 : 청년(근로자)이 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부담금 300만 원(매월 12만 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취업지원금 900만 원, 기업에서 400만 원을 각각 적립해* 1,600만 원(+이자)의 목돈 지원
*정규직 취업 후 1·6·12·18·24개월, 총 5회 적립
 - 3년형 : 청년(근로자)이 기업에서 3년간 근속하면서 자기부담금 600만 원(매월 16만 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취업지원금 1,800만 원, 기업에서 600만 원을 각각 적립해** 3,000만 원(+이자)의 목돈 지원
**정규직 취업 후 1·6·12·18·24·30·36개월, 총 7회 적립
- 3.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참여신청(www.work.go.kr/youngtomorrow) → 정규직 취업 → 청년공제 가입*(www.sbcplan.or.kr) → 공제금 적립(2년 형 : 청년 300만 원, 기업 400만 원, 정부 900만 원) / (3년 형 : 청년 600만 원, 기업 600만 원, 정부 1,800만 원) → 만기(2년/3년) 지급(2년 근속 시 1,600만 원+이자 / 3년 근속 시 3,000만 원+이자)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 신청
-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 청년취업아카데미

1. 대상
 - 학생 : 대학 재학생/대학 졸업예정자(4년제 2~3학년, 2년제 1학년 2학기부터)
 - 기관 : 기업·사업주단체·대학·민간 우수 훈련기관 등
2. 내용
 - 학생 :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과정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며, 연수 후 협약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기관 : 1인당 교육비의 80%를 지원해드립니다.(운영기관 20% 자부담)
3. 방법

직업훈련포털 또는 청년취업아카데미 누리집에서 과정 검색 후 해당 운영기관으로 유선 또는 온라인 신청
4. 문의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 청년취업아카데미(myjobacademy.kr)
 -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2)

MEMO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 일학습병행

1. 대상
 - 학습기업 : 상시근로자 50인(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이면서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
 - 학습근로자 : 특성화고, 일반계고, 전문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등 취업희망자 및 재직 1년 이내 근로자
2. 내용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학습기업에게 현장훈련 학습도구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프라,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현장 훈련비용, 기업현장 교사 및 HRD담당자 수당 등) 지원
3. 방법
 - 기업 :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에 신청
 - 학습근로자 : 일학습병행 학습 기업별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 신청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및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취업 알선 가능
4.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MEMO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자립자금이 필요할 때 희망키움통장(I, II)

1. 대상

구분	가입기준
I 유형 (기초수급자 대상)	■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4인 기준 110만 7,249원)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 재정 지원 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II 유형 (차상위대상)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4인 기준 230만 6,768원) 이하 가구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2. 내용

구분	훈련비 지원율
I 유형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 지급 ■ 3년 이내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II 유형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지원금(10만 원, 본인 저축액 1:1 매칭) 지급 ■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고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을 완료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지원예시

- I 유형 : 본인 저축 1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33만 원
= 월 43만 원 → 3년 후 약 1,550만 원
- II 유형 : 본인 저축 10만 원 + 정부지원금 10만 원
= 월 20만 원 → 3년 후 약 720만 원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8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자립자금이 필요할 때 근로장려금

1.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18.12.31. 현재 가구원(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부양부모)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 :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인 가구
- 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전년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가구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 가족	맞벌이 가족
총소득 기준금액 (2018년 기준)	2,000만 원	3,000만 원	3,600만 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2. 내용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해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미만 가구에 소득수준에 따라 연 최대 300만 원 지급

3. 방법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에 신청

4. 문의

국세청 홈택스(☎126, www.hometax.go.kr)

여성이 일자리를 원할 때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 1. 대상**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희망자
- 2. 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유형	지원내용
취업 상담	구직자의 취업적성을 고려한 취업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 유망직종, 자격시험정보 등 취업정보 제공
직업교육 훈련	전문기술, 기업맞춤형훈련, 취약계층과정 등 취·창업이 용이한 다양한 직업 교육훈련
취업연계 및 인턴십 지원	■ 구인처 발굴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취업연계·동행면접 지원 ■ 기업체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 제공 및 취업장려금 (1인당 300만 원 한도) 지원
사후관리 지원	■ 취업자 대상 직장적응교육 및 상담, 멘토링 등 지원 ■ 채용기업 대상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 평등 교육, 환경개선(수유실, 여성화장실 등) 등 지원

- 3.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 후 신청
※ 새일센터 및 직업교육훈련 현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참고
- 4. 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www.saeil.mogef.go.kr)

자주 하는 질문

인턴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나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인턴을 연계받은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 60만 원 씩을 인턴채용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취업 장려금(기업 60만 원, 인턴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1. 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임신·출산확인서로 확인

알려드립니다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2. 내용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임신 1회당 60만 원 지원(다태아 임신부 100만 원)
-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 ※ 임신 중 신청 : 카드 수령(지원금 생성일) 후부터 분만에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 가능
 - ※ 출산(유산) 후 신청 : 카드 수령(지원금 생성일) 후부터 출산(유산)일 이후 1년까지 사용 가능
 -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3. 방법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 가능 은행 방문 신청
-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직접 카드사(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어플, 전화로 신청
- 복지로에서 신청

4. 문의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 복지로(www.bokjiro.go.kr)

알려드립니다

분만취약지역은 어디인가요?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라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역 지원 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역

〈'19년 분만취약지〉

인천(옹진군, 강화(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보은군, 괴산군),
충남(청양군, 천보(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상주시, 문경시,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영진시), 경남(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함창군)

※ 해당 지역에 분만 산부인과 개설 완료시 분만취약지에서 제외될 수 있음

MEMO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blank primary-ruled paper. It features ten sets of horizontal lines across the page. Each set consists of a solid blue top line, a dashed blue middle line, and a solid blue bottom line,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in handwriting practice. The background is white, and there are no margins or other markings present.

21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 1. 대상**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출산전후 휴가	휴가	- 우선지원 대상기업 최대 90일(쌍둥이는 120일) - 대규모 기업: 최대 30일(쌍둥이는 45일)
	급여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 미달 시 최저임금액)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최대 540만 원 (쌍둥이는 720만 원) - 대규모 기업: 최대 180만 원
유산사산 휴가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휴가 및 급여 지원	

3. 방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자주 하는 질문

비정규직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
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
되면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만 0~2세 보육료 지원

1.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

2. 내용 나이에 따라 월 22만~45만 4,000원의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로 지원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어린이집 (보육료)	종일반	45만 4,000원	40만 원	33만 1,000원
	맞춤반	35만 4,000원	31만 1,000원	25만 8,000원

※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는 지원 불가

※ 어린이집(보육료)을 이용하다가 그만두거나, 유치원(유아학비)에 입소하는 경우는 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 2016년 7월 만 0~2세 맞춤형 보육시행에 따라 종일반(7:30~19:30), 맞춤반(9:00~15:00) 구분

※ 0~2세 맞춤반 아동은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제공(매월 미사용분은 익년도 2월까지 이월 사용 가능)

3.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0233)

알려드립니다

- 지원기간 : 만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제외 :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출국일 이후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소급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지원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 1. 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
- 만 5세 : 2013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 만 4세 : 2014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 만 3세 : 2015년 1월 1일~2016년 2월 29일
- ※ 취학대상 아동(2012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단,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 2. 내용**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원

구 분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6만 원	22만 원	22만 원
보육료(어린이집)			
방과후 과정비	5만 원	7만 원	7만 원

※ 상기 단가는 유아가 교육일수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아 1인당 월 최대 지원 금액임('19년 기준)

- 3.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4. 문의** ■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유아학비 : 에듀콜센터(☎1544-0079)

24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가정양육수당 지원

1. 대상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6세 영유아

2. 내용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
~20만 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0~11개월	20만 원	0~11개월	20만 원	0~35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12~23개월	17만 7,000원		
24~35개월	10만 원	24~35개월	15만 6,000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 원	36~47개월	12만 9,000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 원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 원		

3.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출생아의 양육수당 신청기한이 궁금합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그 외의 출생아 소급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소급지원하지 않습니다.
[세부 기준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25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아동수당

1. 대상
 - 0~만 6세(72개월) 미만 모든 아동('19.1~'19.8월까지)
 - 0~만 7세(84개월) 미만 모든 아동('19.9월부터)
2. 내용
 -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간 월 10만 원 지급 ('19.1~'19.8월까지)
 - 만 7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84개월 간 월 10만 원 지급 ('19.9월부터~)
3. 방법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하거나 복지포(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동수당은 2019년 1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신청한 달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9월부터 대상 연령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MEMO

26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아이돌봄서비스

- 대상**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

서비스종류	대상	이용 시간당	돌봄 서비스 범위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36개월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질병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시설이용 아동**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제 서비스	일반형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학교, 보육시설 및 등·하원(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행거주기 등
	종합형		시간제서비스 일반형 돌봄서비스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 추가 지원 (아동 관련 세탁, 놀이공간 정리·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과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및 감기, 눈병 등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

**시설이용 아동 : 사회복지 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유형	소득 기준 (중위소득 4인 기준)	영아종일제 (시간당 9,650원, 월 60~200시간 이내 정부 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시간당 11,580원, 질병 완치 시까지)			
		정부지원	본인부담	A형(2012.1.1. 이후 출생)		B형(2011.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346만 원)	7,720원	1,930원	9,843원*	1,737원	8,685원*	2,895원
나형	120% 이하(553만 6,000원)	5,790원	3,860원	5,790원	5,790원	5,790원	5,790원
다형	150% 이하(692만 원)	1,448원	8,202원	5,790원	5,790원	5,790원	5,790원
라형	150% 초과	-	9,650원	5,790원	5,790원	5,790원	5,790원

유형	소득 기준 (중위소득 4인 기준)	시간제 서비스 (연 720시간 이내 정부지원)							
		일반형 (시간당 9,650원)				종합형(시간당 1만 2,550원)			
		A형 (2012.1.1. 이후 출생)		B형 (2011.12.31. 이전 출생)		A형 (2012.1.1. 이후 출생)		B형 (2011.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346만 원)	8,203원	1,447원	7,238원	2,412원	8,203원	4,347원	7,238원	5,312원
나형	120% 이하 (553만 6,000원)	5,308원	4,342원	1,930원	7,720원	5,308원	7,242원	1,930원	10,620원
다형	150% 이하 (692만 원)	1,448원	8,202원	1,448원	8,202원	1,448원	11,102원	1,448원	11,102원
라형	150% 초과	-	9,650원	-	9,650원	-	12,550원	-	12,550원

3. 신청 방법 및 문의

- 정부 지원 가정 : 읍면동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포(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 아이돌봄 누리(idolbom.go.kr)에서 신청(대표번호 ☎1577-2514)

알려드립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아시나요?

-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감기·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 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시간제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방과 후 돌봐줄 손길이 필요할 때 초등돌봄교실

1. 대상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
※ 학교 여건 및 학부모 수요를 고려하여 운영시간 탄력적 조정

2. 내용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단체활동 프로그램 및 숙제·독서·휴식 등 개인 활동, 급·간식 지원

단체활동 프로그램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다양한 예·체능,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매일 1개 이상 제공 ※ 음악줄넘기, 북아트, 전래놀이, 생활체육, 창의로봇, 악기연주 등
개인활동 프로그램	숙제하기, 일기쓰기, 독서활동, 휴식 등
급·간식	학생의 영양과 수요를 고려한 안전한 급·간식 제공

※ 급·간식비 및 일부 프로그램에는 수익자 부담(교육비 지원 학생은 전액 무상 지원)

3. 방법 가정통신문 또는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를 통해 신청

4. 문의 자녀 재학(입학 예정) 초등학교

MEMO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국가장학금[I, II유형, 다자녀(세자녀 이상)]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I유형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국가장학금 II유형	II유형에 참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학교 자체 기준으로 선발)
다자녀장학금 (세자녀 이상)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 이하, 다자녀 (자녀 셋 이상) 가구의 모든 대학생(198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미혼에 한함)

※ I 유형 및 다자녀장학금은 성적(B⁺) 및 이수학점(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충족 필요
 ※ 단, 기초·차상위계층은 C⁺ 이상 적용, 소득 1~3구간은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장애대학생은 성적기준 없음

2. 내용

- I 유형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구간별로 차등지원

〈2019년 소득구간별 연간 지급금액〉 (단위 : 만 원)

소득구간	기초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지급액	520	520	520	520	390	368	368	120	67.5

- II유형 : 대학별 자체기준에 따라 지원
- 다자녀(세자녀 이상)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 원 지원(단, 기초~3구간은 연간
520만 원 지원)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www.kosaf.go.kr)

알려드립니다

소득구간이란?

- 소득수준별 맞춤형 학자금 지원을 위해 신청학생 가구의 재산, 소득 등을 조사해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하여 10개의 구간(1~10구간)으로 설정한 제도입니다.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1. 대상**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협약을 체결한 국내 대학 (대학원 제외)에 재학 및 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단,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소속 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인 경우 적용 제외)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소득 8구간 이하이며, 만 35세 이하인 학부생
 - ※ 다자녀(세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이 이용 가능
 - ※ 장년층의 재교육 및 계속교육 활성화를 위해 소득 8구간 이하, 전문대 계약학과
(‘채용조건형’에 한함) 학부생은 만 45세까지 대출 가능
 - ※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에 한해 만 45세까지 대출 가능
- 2. 내용** 등록금 대출은 등록금 전액, 생활비 대출은 연간 300만 원 한도 (학기당 150만 원, 4회까지 분할대출 가능)내에서 연 2.2%(변동금리)로 대출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구간 4구간 이하는 생활비 대출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지원
-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www.kosaf.go.kr)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1. 대상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
2. 내용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
 -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교육서비스 제공
 - 재학대 발생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 학대 재발 위험으로 원가정으로 돌아가기 힘든 아동을 학대피해 아동쉼터에서 보호
 -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상담,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 지원
 - 일상생활지원, 학업지도 및 문화 체험 지원
3. 신고 방법 및 문의 ■ 아동학대 신고전화(☎112) 또는 스마트폰 앱 “아이지킴이112”
 ■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60개소*)에 문의·상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korea1391.go.kr) 참조

자주 하는 질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업무상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직무상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사, 간호사, 치과 의사, 한의사 등)

*교사 직군(초·중등교육법의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학원 및 교습소의 장과 그 종사자

31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의료급여 제도

1. 대상 의료급여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해 지원

구분	지원대상
1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이주민, 악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2. 내용

구분	지원대상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 : (1종)입원 면제, 외래 1,000~2,000원, (2종)입원 10%, 외래 1,000원~15%, 약국 500원(일부 예외 있음)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비, 양압기 임대비용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실시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본 책자 163p)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 골밀도 검사 : 만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만 66세 이상 2년 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만 70세 - 생활습관평가 : 만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 70, 80세

구분	지원대상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60만 원을 가상계좌로 지급 (다태아인 경우 100만 원)
장애인 보장구구입비	장애인보장구 구입금액 지급 ※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3. 방법**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보건기관) 우선 이용 후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이용 가능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1577-0606)에 신청
 - 국가유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1600-0064)에 신청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MEMO

.....

.....

.....

.....

.....

.....

.....

.....

.....

.....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건강보험 차상위

- 1. 대상**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0만 6,768원)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2. 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경감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입원·외래) 면제, 식대의 20%만 부담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 (정액 1,000원, 1,500원)만 부담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지급

-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4.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MEMO

건강증진에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1. 대상 지역 주민
2. 내용
 - 각 지역 특성 및 주민의 건강수요에 따라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 수행
 - 흡연 예방 및 흡연자 금연 촉진
 - 음주폐해 예방관리
 - 생애주기별 만성질환 예방 및 비만관리를 위한 개인별 서비스 제공
 -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 신체활동 및 비만 건강관리
 - 구강건강 증진 및 구강병 예방관리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및 취약계층 환자 지원
 - 산모·영유아 건강관리
 - 치매검진 및 사례관리
 - 가정방문 건강관리 등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MEMO

34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요양서비스, 목욕 서비스, 간호 서비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 등 제공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제공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지역,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요양비 월 15만 원 지급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www.longtermcare.or.kr)

알려드립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전부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기초연금제도

1. 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 하위 70%)이하인 어르신

※ 2019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 2,000원

2. 내용 월 최대 25만 3,750원
(소득하위 20%이하 저소득어르신 30만 원)까지 지원

구분	선정기준액	월 최대 지원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20% 이하	단독가구 5만 원, 부부가구 8만 원	30만 원	48만 원 (1인당 24만 원)
소득하위 70% 이하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 2,000원	25만 3,750원	40만 6,000원 (1인당 20만 3,000원)

※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최소 2만 5,000원에서 25만 3,750원까지 차등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만 65세 미만인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대상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 공지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주택연금제도

1. 대상 보유 주택이 9억 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 어르신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
 ※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2. 내용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

지원예시	집값이 3억 원인 60세 가입자는 매월 59만 5,000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89만 5,000원의 연금수령 (종신지급, 정액형 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19년 3월 기준)
------	--

※ 일정한도 내에서 목돈으로 한 번에 인출해 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 대출 상환용도로 사용 가능

3.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MEMO

.....

.....

.....

.....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사회활동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재능나눔활동	만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시장형사업단	만 60세 이상(기초연금수급자 가점 부여)
	인력파견형	만 60세 이상
	시니어인턴십	
	기업연계형	
	고령친화기업	

*일부 유형 한정하여 만60세 이상 참여 허용

2. 내용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구분		지원내용
사회 활동	공익활동	- 지역사회 공익 증진 프로그램 참여(월30시간 이상, 27만 원 활동수당)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재능나눔 활동	노인의 재능(자격·경력) 활용한 상담안내, 학습지도 참여(월10시간 이하, 10만 원 활동수당)

구분		지원내용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 취약계층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월60시간, 월 급여 최대 59만 4,000원(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별도)) - 지역아동센터·장애인거주시설 식사보조, 환경정리 등
	시장형사업단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사업단에서 활동 - 식품 제조·판매, 매장 운영, 택배 등
	인력파견형	■ 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
	시니어인턴십	■ 민간기업 취업지원 - 기업인턴(3개월) 후 계속고용 유도 (기업대상 인건비 지원)
	기업연계형	■ 민간기업 취업지원 - 기업에 노인고용확대를 위한 간접비 지원
	고령친화기업	■ 노인다수고용기업 설립 또는 우수 노인고용기업 지원 - 기업인증형·모기업연계형·시장형사업단 발전형·브릿지형 등

3. 방법 주민센터, 지역사회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신청

4. 문의 ■ 노인일자리 상담안내 (☎1544-3388)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자주 하는 질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비도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시 소득으로 보나요?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비는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근로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치매가 걱정될 때 치매검진 지원

- 1. 대상**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진단·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4인 기준 월 553만 6,243원) 이하인 어르신
- 2. 내용**
-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 무료 실시
 -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 필요 시 전국 600여 개소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감별검사 실시 및 검사비 일부 지원

검사종류	검사내용	지원내용
선별검사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간이정신상태검사 (MMSE-DS)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진단검사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8만 원) 지원
감별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종합병원급 8만 원, 상급종합병원 11만 원) 지원

- 3.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어르신의 건강이 걱정될 때 노인 틀니 지원

1. 대상

- 완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 부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2. 내용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 시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30%	5~15%	5%	15%

3. 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대상자 등록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틀니, 깨끗하고 튼튼하게 사용하는 법

- ① 치약으로 닦지 마세요. 치약은 표면을 쉽게 마모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 ② 뜨거운 물 소독도 피해야 합니다. 모양이 망가지기 쉽습니다.
- ③ 부드러운 칫솔모로 살살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 ④ 하루 8~12시간 착용이 적당합니다. 장시간 착용 시 잇몸이 붓고 통증이 발생합니다. 잠 잘 때는 꼭 빼주세요.
- ⑤ 공기 중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상온 보관 시 틀니가 건조해서 뒤틀리거나 깨질 수 있습니다. 전용 세정제에 담가 보관하세요.

어르신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이 궁금할 때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교통비	65세 이상 어르신	■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 무료 이용 - KTX·새마을호·무궁화호 30% 감면 (KTX·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 통근열차 50% 감면	이용 시 신분증 제시 (코레일 ☎1544-7788)																
		■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국내선·국제선 10% 감면 (단, 성수기, 일부노선은 제외)	이용 시 신분증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여객운임 20% 감면	이용 시 신분증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문화 활동비	65세 이상 어르신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입장 ■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이상 할인 ■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 (대관공연 제외) 입장료 50% 할인	입장 시 신분증 제시																
국민 건강 보험료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	■ 소득·재산요건 만족 시 최대 30% 할인 <table><tr><th>구분</th><th>1등급</th><th>2등급</th><th>3등급</th></tr><tr><td>소득</td><td colspan="3">360만 원 이하</td></tr><tr><td>재산</td><td>6,000만 원 이하</td><td>9,000만 원 이하</td><td>1억 3,500만 원 이하</td></tr><tr><td>경감률</td><td>30%</td><td>20%</td><td>10%</td></tr></table>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소득	360만 원 이하			재산	6,000만 원 이하	9,000만 원 이하	1억 3,500만 원 이하	경감률	30%	20%	10%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소득	360만 원 이하																		
재산	6,000만 원 이하	9,000만 원 이하	1억 3,500만 원 이하																
경감률	30%	20%	10%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이며,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인 경우 30% 경감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통신 요금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 (월 1만 1,0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감면(각각 35%) ※ 월 최대 2만 1,000원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www.bokjiro. go.kr), 정부24 (www.gov.kr) 로 신청 (미래창조과학부 ☎1335)
각종 공공 요금	노인 복지 시설	■ 도시가스요금 감면	시설에서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시설에서 신청 (한국전력공사 ☎123)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주민센터에서 신청 (환경부 ☎1577-8866)

MEMO

.....

.....

.....

.....

.....

.....

.....

.....

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 장애인연금

- 1. 대상**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이하에 해당하는 자
- 2. 내용**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2019년 4월 기준, 월지급액)

구분	만 18세 ~ 64세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38만 원 ■ 기초급여 30만 원 ■ 부가급여 8만 원	38만 원 ■ 부가급여 38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32만 3,750원 ■ 기초급여 25만 3,750원 ■ 부가급여 7만 원	7만 원 ■ 부가급여 7만 원
차상위 초과	27만 3,750원 ■ 기초급여 25만 3,750원 ■ 부가급여 2만 원	4만 원 ■ 부가급여 4만 원

*차상위계층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0만 6,768원) 이하

**만 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 신청 필요)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매월)
-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장애인연금(www.bokjiro.go.kr/pension)

자주 하는 질문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

장애등급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20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은 경우', '2007년 4월 이전에 받은 장애등급으로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등급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주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검사비용이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 원 범위 내
-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검사비용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 원 범위 내

MEMO

일자리가 필요할 때 장애인 일자리 지원

1. 대상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2. 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근로시간	급여(매월)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미취업 등록 장애인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행정보조 업무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174만 5,150원 12월 : 163만 6,000원
	시간제			일 4시간 주 5일	87만 2,580원 12월 : 82만 6,650원
복지 일자리			사무보조, 사서보조, 우편물 분류, 주차단속, 환경도우미, 급식도우미 등	주 14시간 월 56시간	46만 7,600원
안마사 파견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안 마서비스	일 5시간 주 25시간	111만 3,740원 12월 : 104만 5,500원
요양보호사 보조		발달 (지적, 자폐)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조	일 5시간 주 25시간	109만 3,850원 12월 : 102만 7,050원

3. 방법 시군구청 장애인 일자리사업 담당과에 신청
※ 시군구청 단위로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참여자 모집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43

일자리가 필요할 때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 1. 대상** 만 15세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장애인
※ 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1단계 이수자로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

- 2.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전용 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직업능력개발원(5개소), 청각장애인훈련센터(2개소), 맞춤형훈련센터(6개소), 발달장애인 훈련센터(5개소)

구분	지원내용
훈련참여수당	월 20만 원(취업성공패키지 훈련과정 연계 대상 월 28만 4,000원) 지급
교통비	훈련기관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에게 월 5만 원 지급
식비	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식이조절 등으로 인한 개별 도시락 지참), 1일 5시간 이상(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민간기관 훈련생에게 식비 지급을 희망할 경우 월 6만 6,000원 지급

-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훈련은 수시 입학 지원
※ 직업능력개발원의 정규훈련, 청각·발달장애인훈련센터 훈련과정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수료해야 함
-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www.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직업능력개발원의 훈련기간이 궁금합니다.

- 표준훈련시간 700시간(6개월)과 1,400시간(12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훈련 진행 정도에 따라 훈련시간은 변동될 수 있고, 전체 훈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직업능력개발원에 입학해 훈련을 받다가 적성에 안 맞는 경우 다른 훈련 직종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훈련생이 훈련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훈련진행 상황을 고려해 교사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업능력개발운영위원회를 열어 훈련 직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인훈련을 받으려면 반드시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1단계를 수료해야 하나요?

- 2017년부터 공단의 맞춤훈련과정을 제외한 모든 훈련과정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인 진로설계 과정을 수료해야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 후 선정되면 진로설계를 위한 상담 등 1단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수당은 언제 지급해 주나요?

- 훈련수당은 월 1회 지급됩니다. 1개월의 훈련기간이 지난 후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고,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참여자의 경우, 훈련참여수당 지급기한은 최대 1년입니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 반드시 가족사 생활을 해야 하나요?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통학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44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장애인 활동 지원

1. 대상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사람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심신 상태와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평가하는 인정조사

2. 내용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활동지원등급	기본급여	추가급여
1등급	153만 원	독거, 취업, 취학 여부, 출산 여부 등 생활환경에 따라 13만 원~353만 9,000원 추가 지급
2등급	121만 9,000원	
3등급	92만 1,000원	
4등급	61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자사에 상담 후 신청

4. 문의

- 국민연금공단(☎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매년 신청해야 하는지요?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2년간 지원되며,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다만, 연속해서 2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면 2회부터 3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요금을 감면받고 싶을 때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감면 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방송 요금	시청각 장애인 가정	TV 수신료 전액 면제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통신 요금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 원 한도 50% 감면 ■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유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	통신사 대리점 방문신청, 복지로 (www.bokjiro. go.kr)나 민원24 (www.minwon. go.kr)로 온라인 신청
교통비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 공영버스 무료 이용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코레일 ☎1544-7788)
		■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1~4급 장애인), 아시아나 항공(등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감면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등록장애인 및 1급 장애인을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50% 감면 - 4~6급 장애인 20%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자가용 자동차 관련	등록장애인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중증장애인(1~3급) 50% 감면 - 경증장애인(4~6급) 30% 감면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감면 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자가용 자동차 관련	등록장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 - 하이패스 차로 :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한국도로공사 (☎1588-2504)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시군구 교통담당과)
각종 공공 요금	1~3급 장애인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 지자체별로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환경부 ☎1577-8866)
		■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6,000원 감면 (하절기 2만 원)	한국전력(☎123)
문화 활동비	등록장애인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입장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과태료	1~3급 장애인	질서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1~3급)	사이버경찰청 (☎182)
기타	등록장애인	■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 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	코레일 (☎1544-7788)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 대상 가정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가족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가족교육	생애주기별 신혼기·중년기·노년기 부부교육,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등
가족상담	가족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부부상담, 부모-자녀상담, 이혼상담 등
가족문화 프로그램	가족캠프, 가족사랑의 날 행사, 건강가정캠페인 등

3. 방법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화 및 방문, 온라인 신청

4. 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MEMO

.....

.....

.....

.....

.....

47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2. 내용** 아동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급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연 5만 4,100원 지급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 원 지급

- 3.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4.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 온라인상담(www.mogef.go.kr) → 한부모 → 온라인한부모가족상담 코너)

알려드립니다

복지서비스 대상인 한부모가족이란?

-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48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2인 기준 174만 3,917원)이하인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2인 기준 209만 2,700원) 이하

- 2. 내용**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한부모의 교육비 지급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지급
검정고시 학습비	■ 검정고시 학원, 대안학교, 온라인 학원(원격평생교육시설) 수강 시 가구별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학원등록비, 교재구입비, 학용품비(5만 4,100원) 지원
고교생 교육비	■ 기준 중위소득 52%(4인 기준 239만 9,039원) 초과-60% 구간 청소년 한부모의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 전액 지급(재학 중인 학교로 입금)
자립지원 촉진수당	■ 학업·직업훈련, 직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 원 지급

- 3.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포(www.bokjiro.go.kr)에서 신청
- 4.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 온라인 상담(www.mogef.go.kr) → 한부모 → 온라인한부모가족상담코너

자주 하는 질문

청소년한부모가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현재 13만 원을 받고 있다면 추가로 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계 급여수급자 가구의 아동은 지원하지 않으며, 소득이 중위소득 52%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아동 1인당 1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1. 대상 다문화가족
2. 내용 한국어교육, 가족상담, 취업교육 및 연계 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멘토링, 자조모임 등 지원
3.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
※ 다누리 앱을 통해 인근 센터 확인
4.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다누리 누리집(www.liveinkorea.kr), 다누리 앱

MEMO

북한이탈주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1. 대상 북한이탈주민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특례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3년(근로무능력가구 5년)까지 특례* 적용 *근로무능력가구일 경우 가구원수에 1명을 추가한 소득 인정액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국민연금 특례	보호결정 당시 만 50~60세 미만인 자가 가입 기간 5년을 채우면 노령연금 수급

3. 방법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4. 문의

- 생계급여·의료급여 : 시군구청
- 연금특례 : 국민연금공단(☎1355)

MEMO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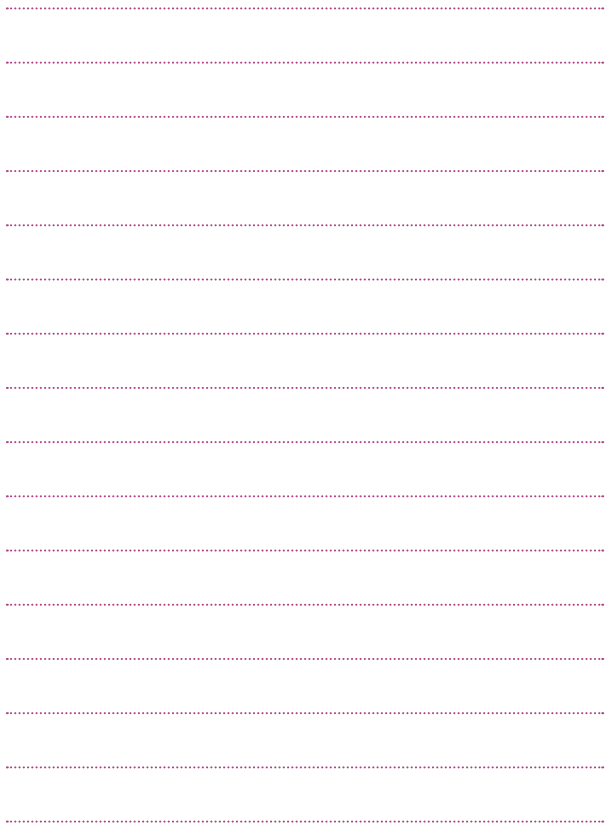
.....

.....

.....

.....

MEMO



펴낸곳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정보본부
범부처정보지원부

인쇄 2019년 5월

디자인 (사)한국나눔복지연합회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921-10

※단, 이 책에 사용된 이미지는 공공의 목적 이외(상업용·판매용)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